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통령경호처와그소속기관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경호처에 경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(5급 2명, 6급 4명, 7급 3명, 8급 3명)을 증원하고,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6급 1명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, 1명(6급 또는 연구사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도록 하며, 경호지원단의 명칭을 지원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경호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3. 12. 13. ~ 12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경호지원단을”을 “지원본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호지원단장”을 “지원본부장”으로, “이사관”을 “2급 경호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이사관”을 “3급 경호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경호지원단”을 “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이사관”을 “2급 경호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1명(5급 1명)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”를 “1명(5급 1명)은 인사혁신처, 1명(6급 1명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1명(6급 또는 연구사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인사혁신처장”을 “해당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91”을 “703”으로 하고,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 “431”을 “433”으로 하며, 3급·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“404”를 “406”으로 하고, 일반직 또는 특정직 계 “259”를 “269”로 하며, 5급 이하 “259”를 “269”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3073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하부조직) ① 대통령경호처 에 기획관리실·경호본부·경 비안전본부 및 <u>경호지원단</u> 을 둔 다.	제5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원본부를</u> ---- --.
② 기획관리실장·경호본부장 ·경비안전본부장 및 <u>경호지원 단장</u> 은 <u>이사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지원본부 장</u> -- 2급 경호공무원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감사관은 <u>부이사관</u> 으로 보한 다.	④ ----- <u>3급 경호공무원</u> ---- --.
⑤ 기획관리실, 경호본부, 경비 안전본부 및 <u>경호지원단</u> 의 하부 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 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.	⑤ ----- ----- <u>지원본부</u> ----- ----- -----.
제6조(경호안전교육원) ①·② (생 략)	제6조(경호안전교육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원장은 <u>이사관</u> 으로 보한다.	③ ---- <u>2급 경호공무원</u> 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(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) ①·② (생 략)	제7조(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중 <u>1명(5급 1명)</u> 은 인사 <u>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</u>	③ ----- ----- <u>1명(5급 1명)</u> 은 인사 <u>혁신처, 1명(6급 1명)</u> 은 과학기

야 한다.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 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대통령령 제33073호 대통령경호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영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8명(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, 경호주사보 3명 및 경호서기·행정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·방송통신서기·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4명)과 별표 4의 정원 1명(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)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

술정보통신부, 1명(6급 또는 연구사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----- 해당 기관의 장-----
--.

대통령령 제33073호 대통령경호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

<삭 제>

각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, 경호
서기보 · 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
보 · 농업서기보 · 임업서기보 ·
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
통신서기보 · 운전서기보 또는
위생서기보 7명 및 별표 4의 경
호주사 1명으로 본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(제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91</u>	<u>703</u>	+12
•	•	•	
•	•	•	
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	<u>431</u>	<u>43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·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	<u>404</u>	<u>406</u>	+2
일반직 또는 특정직 계	<u>259</u>	<u>269</u>	+10
5급 이하	<u>259</u>	<u>269</u>	+1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6